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823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12.

발 의 자:허종식・김성주・신동근

유동수 · 정일영 · 이성만

김정호 • 어기구 • 배진교

김교흥 • 박찬대 • 이동주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,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활용한 합리적 의료선택을 도와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.

그런데 현행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,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.

특히 평가 결과 도출 및 가감지급의 기반이 되는 평가자료의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자료수집에서 결과 도출까지 1~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바, 의료 현실을 평가 결과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에 애로사항이 있고, 의료

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로 작용함.

이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,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 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임(안 제47조 의4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5항 전단 중 "제63조에 따른"을 "제47조의4에 따라"로 한다.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4(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)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의· 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·시설·장비,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 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④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6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	제47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
지급 등) ① ~ ④ (생 략)	지급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
	<u>о́</u> )
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<u>제63</u>	⑤ <u>제47</u>
<u>조에 따른</u> 요양급여의 적정성	조의4에 따라
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	
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	
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	
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평가	
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	
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	
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	
다.	
⑥・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47조의4(요양급여의 적정성 평
	가)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
	<u>의 의·약학적 타당성과 비용효</u>
	과성을 제고하고 의료의 질을
	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
	적정성 평가(이하 이 조에서
	"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

인력·시설·장비,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③ 심사평가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함께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를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 야 하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요 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 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 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 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·범위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3조(업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업무 등) ① (생 략)

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 <삭 제> 른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 의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.